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56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4.

발 의 자 : 정을호 · 임호선 · 이연희
박수현 · 황명선 · 추미애
정태호 · 한준호 · 전현희
강경숙 · 김준혁 · 백승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해 보육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.

보육서비스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에는 인건비, 급·간식비, 교재·교구비, 시설비, 관리 운영비 등이 포함됨.

그런데 2023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·간식비용은 1세반 기준 월 55,000원 수준으로 영양가 높은 급·간식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, 표준보육비용의 구성 항목으로서 산출되다 보니 별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.

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유아(3~5세)의 급·간식비가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차이나며, 같은 어린이집이라도 지역별로 급·간식비 지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.

특히, 3~5세 유아 1인당 급·간식비 지원액은 서울의 경우 유치원에서 5,101원이 지원되지만, 어린이집에서는 842원이 지원되어 약 6배의 차이를 보임. 충남의 경우 유치원은 3,330원이 지원되지만, 어린이집은 600원이 지원되어 약 5.5배의 격차가 나타남.

이에 따라 급·간식비용을 표준보육비용과 별도로 산정하고, 급·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4항 및 제7항).

법률 제 호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표준보육비용을”을 각각 “표준보육비용 및 급·간식비용을”로 한다.

이 경우 어린이집 급·간식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4조(무상보육) ① ~ ③ (생략)	제34조(무상보육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이 경우 어린이집 급·간식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.</u>
⑤ · ⑥ (생략)	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⑦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<u>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,</u>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, 최저임금 상승률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<u>표준보육비용을 결정</u> 하여야 한다.	⑦ ----- <u>-표준보육비용 및 급·간식비용을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--표준보육비용 및 급·간식비용을--</u> -----.

⑧ (생 략)	⑧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